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단체취급특약

2. 단체취급계약의 할인율에 관한 사항

- ① 단체취급계약의 할인율은 예정수금비율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5년 만기 보험: 영업보험료의 1.5%이하

6년 만기 이상의 보험: 영업보험료의 2.5%이하

다만, 생존급여금이 전혀 없는 순수보장성보험(특약이 부가된 경우를 포함함)은 영업보험료의 2.5%이하로 한다.

- ② 나이만기 보험의 경우에는 중간 가입나이에 의한 보험기간을 적용한다.

- ③ 일시납의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부가되는 특약의 할인율은 주보험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3. 단체취급 보험요율의 계산

각 주보험 및 특약별로 보험가입금액 10만원당 보통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요율에 (1-할인율)을 곱한 금액을 단체취급 보험요율로 한다.

4. 추가가입자에 대한 단체취급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

단체취급 할인율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단체에 추가 가입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5. 단체취급계약서의 서식은 별첨 서식으로 한다.

[별첨-표준계약서]

갑
을

보험주식회사

갑과 을은 단체취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조항을 상호 이행하기로 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보험료의 납입)

- ① 갑은 소속원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갑은 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시에 가입자의 탈퇴 또는 추가납입에 따른 보험료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보험료 영수증) 갑으로부터 보험료가 납입된 때에는 을은 납입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3조(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교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는 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별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4조(단체취급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효력이 상실된 단체취급계약은 부활(효력회복)할 수 없다.

제5조(보험약관의 적용)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을의 보험약관에 의한다.

제6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증거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서기 20 년 월 일

갑
소재지
단체명
대표자
인

을
서울특별시
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인